

<p>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장 제11절의 제목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을 “서울역사박물관”으로 한다.</p> <p>제71조 제1항중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을 “서울역사박물관”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사업소 명칭변경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p> <p>①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립박물관장의 소관사무는 서울역사박물관장이 승계한다.</p> <p>②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립박물관 소속 공무원은 서울역사박물관소속공무원으로 본다.</p> <p>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명 “서울특별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설치조례”를 “서울역사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설치조례”로 하고, 동조례 제1조중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을 “서울역사박물관”으로, “서울특별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를 “서울역사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로 한다.</p> <p>②서울특별시립박물관유물수집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명 “서울특별시립박물관유물수집및관리조례”를 “서울역사박물관유물수집및관리조례”로 하고, 동조례 제1조중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을 “서울역사박물관”으로 하며, 제4조제1항중 “서울특별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를 “서울역사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로 하고, 제8조제2항중 “서울특별시립박물관장”을 “서울역사박물관장”으로 한다.</p> <hr/>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 중 “면제하거나”를 “면제하고”로 하고, 동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3.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기념관을 관련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수입이 적어 운영이 적</p>	<p>자인 시설에 한한다)</p> <p>제2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⑦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켰을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p>제2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최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③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hr/>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5항 본문중 “제4항”을 “제3항”으로, 동항 단서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6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7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 중 공사비를 일시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다음중 제1호에 해당하는 주거용건물에 대하여는 급수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공사비를 감면해 주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 중 공사비를 일시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하며, 동조동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면적 45제곱미터 미만의 주거용 건물 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작은 구경의 인입급수관으로 수도물을 공급받는 주택 3. 공동급수장치를 이용하는 주택 중 전용급
--	--

수 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주택 제9조제2항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0조 중 “지역 및 특정지역”을 “지역”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수도요금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지역
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3. 관 노후등 수요가의 귀책사유 없이 불출수되는 지역의 구경별 기본요금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대상자의 구경별 기본요금
5.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 기본 요금
6. 기타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도물 공급과정에서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1조제1항제1호 중 “기일”을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890
----------	-----

제안년월일 : 2001년 9월 일
제 안 자 : 문화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년 6월 9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01년 6월 11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20회 정례회 제3차 문화교육위원회(2001.6.25.)상정·질의·토론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2001. 9. 4.)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국장 임재오)

가. 제안이유

서울시에서 설립하고 있는 박물관의 개관시기(2002. 4 예정)가 다가옴에 따라 전시공사를 비롯한 개관준비 업무가 증대되고, 전시내용 등 구체적인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자

문이 요구되어 개관준비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설치·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의 구성인원과 기능을 확대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현재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있으나 행정(1)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장을 2인으로 보강하고, 위원수를 현행 20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증원함.(안 제3조)
- 위원회의 자문사항 중 위원장 또는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
- 전문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윤병국)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설립하고 있는 박물관의 개관시기(2002. 4 예정)가 다가옴에 따라 전시공사를 비롯한 개관준비 업무가 증대되고, 전시내용 등 구체적인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이 요구되어 개관준비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설치·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의 구성인원과 기능을 확대하려고 제안된 것임.
- 먼저, 위원장을 행정1부시장을 포함한 2인으로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해(안 제3조제2항), 동 위원회가 의결기관이 아닌 시장의 자문기관이고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집행기관의 하나인 부시장의 참여는 적절치 않으나, 동 위원회가 개관시까지만 운영되는 한시적인 점과 부시장이 동 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방향설정으로 보다 효율적인 자문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동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위원회 위원을 현재 20인 이내서 25인 이내로 조정하려고 하는데 대해(안 제3조제1항), 이는 부시장이 위원장 2인 중 1인으로 추가됨에 따라 당연히 늘어나게 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위원수를 25인으로